

# 17·18世紀의 濟州鄉村 社會構造와 그 性格

——濟州 鄉案과 薦記를 중심으로 ——

姜 昌 龍\*

## I. 序 言

일반적으로 鄉案하면 在地土族들의 결속 및 공고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名單을 일컫는다. 鄉案을 작성하게 된 동기로는 첫째 鄉村社會의 지배 질서를 기존 土族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土族들 간에 治鄉之人으로서 결속하는 것이며, 둘째 조선초기부터 土姓品官들의 新來人 鄉吏階層을 제어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세째 在地土族들의 官職에 대하여 鄉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sup>1)</sup> 그러므로 鄉案은 鄉村社會의 土族들간에 특권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

\* 濟州島史研究家

- 1) 鄉案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 이르러 鄉村社會의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는 아래와 같다.  
金龍德, 〈鄉約과 鄉規〉《韓國史論》8. 國史編纂委員會, 1980.  
金仁杰, 〈조선후기 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土族〉《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1983.  
金錦逸, 〈朝鮮後期 鄉案에 대한一考察〉《韓國史學》9. 1987.  
朴景夏, 〈倭亂直後의 鄉約에 관한 연구—高坪洞 洞美里 중심으로〉中央大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4.  
申正熙, 〈15, 16세기 鄉村教化政策과 鄉規에 대하여〉《東義史學》2. 1985.  
申正熙, 〈鄉案研究〉《大邱史學》26. 1984.  
鄭震英, 〈朝鮮前期 安東府 在地土族의 鄉村秩序〉《大邱史學》27. 1985.  
鄭震英, 〈16세기 鄉村問題와 在地土族의 대응〉《民族文化論叢》7. 1986.  
鄭震英, 〈壬亂前後 尚州地方 土族의 動向〉《民族文化論叢》8. 1987.  
崔虎, 〈丹城鄉案에 대한 고찰〉《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8.  
韓相權, 〈16·17세기 鄉約의 機構와 性格〉《慶檀學報》58. 1984.  
川島藤也, 〈丹城鄉案에 대하여〉《清溪史學》4. 1987.  
川島藤也, 〈李朝中期에 있어서 鄉案의 構造와 役割—昌寧鄉案에 대한 研究序說〉《第一會國際學術會議論文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田川孝三, 〈이조의 鄉規에 대하여 1, 2, 3〉《朝鮮學報》, 76, 78, 81, 1975.

여身分間에 강한 배타성, 폐쇄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듯 鄉案은 在地士族중 本人의 内, 外 및 妻族에 하자가 없는 門閥顯族이어야만 鄉案에 入錄될 수 있었던 것이다. 鄉案에 入錄된 자를 鄉員이라 하였으며, 鄉任(座首, 別監, 風憲)은 鄉案에 入錄된 鄉員중에서 선출하여 그 職을 맡겼던 것이다. 壬辰倭亂前의 鄉案은 신분적 배타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던 것이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鄉村社會는 큰 변화를 맞아서 鄉案자체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壬辰倭亂 이후 地方勢力의 弱化로 말미암아 1603年에 京在所가 학파되자 지금까지 京在所에 임명하던 留鄉所座首는 守命이 擇差하게 되었다. 丁卯, 丙子胡亂을 겪으면서 鄉村社會는 피폐 혼란이 가중되었고, 1654年에 賦將事目的 시행으로 座首先가 軍務, 軍器, 機軍등의 업무를 맡아 잘못이 있으면 棍杖까지 맞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미달이었던 鄉外人이 鄉案에 入錄되어 새로운 势力으로 등장하였다.<sup>2)</sup> 이리하여 朝鮮時代 鄉村社會에서 신분적 권위였던 鄉案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18世期 초엽 鄉案의 특징은 향안입록자가 급증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鄉案의 추록이 종식되거나 鄉案이 파치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 鄉案은 19世期에 들어서도 상당기간 유지되었고, 특히 西北地方의 경우에는 그것이 富民侵奪의 도구로서 韓末까지 그 기능을 발휘한 것도 있었다.<sup>3)</sup> 이런 鄉案의 기존의 연구를 힘입어 濟州地方의 鄉案은 어떠한 모습과 기능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테면 濟州地方의 경우에는 조선초기부터 평안도와 황경도 곧 兩界地方와 같이 변방으로 취급하여서 그전부터 존재하여 오던 士官制가 변화하여 그들의 성장과정 속에 나타난 실태를 엄밀히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濟州地方의 경우에 그前부터 있던 士官制가 左右都知管으로 바뀌고 또한 鎮撫로 변

2) 金龍德, 〈鄉規研究〉《韓國史研究》, 54. 1986.

金仁杰, 〈조선후기 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士族〉《金哲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3) 여기에 관한 연구로는 金仁杰, 〈조선후기 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士族〉 pp. 554-557가 참조된다. 그는 여기서 南北의 鄉案은 그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여 賣鄉事件 등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기는 하였지만 19세기까지 계속 가능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한 것은 자료로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변화실상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구가 진전된 바가 없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16世期부터 18世期까지 존재하던 在地土族의 구성과 역할, 성격 및 의미를 濟州鄉校에 所藏되어 있는 濟州鄉案과 薦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를 밝히고자 하면 濟州地方에 있어서 그前에 존재하던 士官制 및 鎮撫까지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資料에 관하여서도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에 나타난 의미와 성격을 考究한 후에 濟州地方에서 鄉案과 薦記의 지니는 의미와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비교 검토하는 방향에서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資料의 한계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실태분석은 가능하나 이것이 다른 지방과 비교하고자 하면 구체적인 규약인 鄉規가 없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철저하지 못함을 밝히는데 이는 차후에 자료를 보강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하여 과제로 남길 따름이다.

## II. 濟州鄉村 社會의 構造와 內容

### 1. 濟州鄉村 社會의 形成過程

朝鮮初期부터 제주지방에는 그前에 高麗시대부터 元의 지배하에 형성된 토착민의 회유정책의 일환으로 생긴 士官이라는 일반 鄉職의 존재해오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초기에 이르러 士官制로 정착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제주지방은 欽羅國이래의 지방지배체제의 遺風이 오래 존속되어 있었다. 이는 『世宗實錄地理志』, 『高麗史』, 「星主高氏家傳」에 의하면, 高麗 太祖23年 이전에 星主 高自堅과 王子 梁且美가 王建을 謁見한 바 있었으며, 또 太祖 21年 12月에 來朝한 欽羅國太子 末老에게 星主, 王子의 爵號를 준 사실로 볼 때에 濟州는 麗初이래 高麗王朝의 霸業策에 의해서 일반 郡縣과는 다르게 星主·王子를 주축으로 하는 3姓首長들의自治에 거의 맡겨 두었다.<sup>4)</sup> 그러

4) 李樹建, 〈『土姓』研究〉(其一) pp. 45-47. 여기에 보면, 濟州島의 郡縣化와 土姓의 유래 및 문화과정이 육지의 일반 郡縣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군현 토성들이 각기 邑司를 근거로 戶長層을 세습한 것과 같이, 제

므로 하여 麗初부터 15世期까지 濟州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토착세력은 高·梁·夫의 三姓과 高氏의 外孫인 文氏인 것이다. 이는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보면 土姓으로는 高·梁(良後改梁)夫·文·(初寶城郡之福城縣人, 來婿于高氏, 其子孫有繼高氏爲王子者)라 本州의 姓氏로 곧 土姓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高麗 아래로 존재하던 土姓들의 鄉職체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sup>5)</sup> 蒙古의 침입이후 제주지방에는 耽羅摠管府가 설치되어 약 100년간이나 元의 지배하에 있었다. 백년 동안 지배하는데 元에서는 제주지방을 통치하는 동안에 제주지방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前에부터 존재하던 星主와 王子를 士官으로 삼아서 통치하였던 것이다. 조선초기에 이르러서도 제주지방에서는 王爵을 경시하고 士官을重重히 여겨 濟州子弟의 從士者로서도 千戶·百戶에 差授케 하였다. 그리고 星主와 王子를 都州官의 左·右都知管으로 삼고, 그 아래 千戶所를 두고, 다시 그 아래에 都千戶·上千戶·副千戶 等을 배치하는 조직으로 형성되었다.<sup>6)</sup> 제주의 士官은 모두 印信을 받고 守令과 竝立하여 地方行政에 있어서 衙前吏卒을 통솔하고 있었다. 이 士官制가 文宗·睿宗年間까지 기록이 있어 이것이 존재하여 윤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16世期 이후에 관한 제주지방의 在地土族의 支配體制에 관한 資料가 없는 관계로 일단 16世期에 관한 기록물인 典籍 중에서 편린적으로나마 제주지방의 실상을 밝히는 것으로 제주지방의 在地土族의 실상을 간단하나마 정리해본다. 먼저 沖庵 金淨의 『濟州土錄』에 의하면 제주지방 사람인 生員 金良弼外에는 글 아는 자가 매우 적고 사람의 마음을 소홀히 하였다. 品官으로부터 아래로 미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정의 귀인과 교분을 맺어 (사람마다 부처에게 원하지 아니

주 3姓도 本邑의 治所(大村)을 중심으로 星主·王子職을 세습해 나가면서 중앙으로부터 武散階를 받기도 하고 혹은 上京從仕하기도 하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5) 이런 鄉職의 체계에 관해서는 旗田巍 〈高麗의 武山階—耽羅의 王族〉《朝鮮中世社會史의 研究》pp. 395-397를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6) 李載鎮, 〈朝鮮初期의 土官〉《朝鮮初期社會構造研究》一潮閣, 1984년.

吉田光男, 〈15世期 朝鮮의 土官期—李朝初期地方支配體制의 一斷面〉《朝鮮史研究會論文集》18. 1981년.

하는 이가 없었다.) 그중에서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鎮撫되기를 구하고 (地方 사람들은 星主이래의 遺風이 그러하니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다음은 旅帥요 다음은 書員(以下是 品官이 아니다)・持印・貢生(모두 平民으로 鄉吏)인데, 나날로 각각 선악을 가리지 않고 탐내어 취함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 뇌물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렴결백하고 의로움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제압하고 무뢰한 것으로 어진 것을 겹나게 해 아래 두지 않았다.<sup>7)</sup> 제주지방의 留鄉品官은 鎮撫一旅帥一書員으로 구성되며 持印一貢生은 鄉吏層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초기의 星主・王子의 遺風이 존속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볼 때에, 지금 侯(辛淑晴)가 그 선발함을 받아서 먼 바다 건너기를 평탄한 길과 같이하여 이불을 가져가면서도 중얼거리는 기색이 없었으니, 후는 참 어질도다. 부임하매 부지런하고 간절히 임금의 덕을 宣揚하고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急務를 삼아서 安撫한 지 3년에 사람들이 매우 和하였다. 이에 그 지방의 豪族 高潤의 무리 수십 명이 청하기를, “觀德亭은 고을사람들의 활쏘는 곳을 익히는 곳인데, 여러 해가 되어서 기울고 허물어져서 활쏘기를 익힐 곳이 없으니, 심히 우리 고을의 결함입니다.”하였다.<sup>8)</sup> 제주지방에는 土豪인 高潤의 무리가 존재하였음을 나타내어 준 것이다. 또한, 陸閑을 東萊로 유배하였다 土豪로서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까닭이다.<sup>9)</sup> 여기서도 土豪가 존재함을 드러내는데 그렇다면 제주지방의 경우에는 留鄉品官과 土豪로서 지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留鄉品官과 土豪가 하나일 경우도 있

7) 金淨, 《沖庵集》〈濟州風土錄〉

土人生員金良弼外 識文者絕少 人心鹵莽 自品官下至微者 皆結交朝貴 〈無人無願佛者〉 其豪右求爲鎮撫 〈土人自星主以來遺風 然不足恠也〉 次者旅帥 次者書員 〈此以下非品官〉 持人貢生 〈皆平民等鄉吏〉 日各以漁利爲事毫縷細故 皆有賄賂不知廉義爲何事 以強制弱 以暴犯仁不下.

8) 中宗 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 38권 濟州牧 《樓亭條》〈觀德亭—徐居正의 重修記〉.

侯其賢矣哉 及到官拳拳以宣 上德恤民隱爲急 安撫三年人乃大和 於是土豪高潤等數十人 請曰 觀德亭寶州人習射之地 世久頽圯肆業無所甚 爲吾州之欠.

9) 『中宗實錄』 中宗 6年 5月 丙寅(17일)條

流陸閑于東萊 土豪奪民財產也.

으나 일단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앞서 제주지방의 姓을 살핀바와 같이 15世期 이후에 제주지방의 移住 및 定着한 여러 家門이 있는데 이들의 차후에 제주 留鄉品官 또는 土豪로 성장하였을 것이다.<sup>10)</sup> 이를 살펴보고자 하면 먼저 『新增東國輿地勝覽』 姓氏條에 나타난 鄭·金·李·文·安·玄·咸·楊〈모두 屬縣이다.〉金·李·朴·林·俞·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모두 內姓이다.〉<sup>11)</sup> 여기에 먼저 鄭·金·李·文·安·玄·咸·楊 等 모두 島縣姓인데 이들은 그전에 존속하던 17개 縣에 살았던 대표적인 姓氏를 밝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新村縣·咸德縣·金寧縣·貴日縣·高內縣·涯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兔山縣·狐兒縣·洪爐縣·狼來縣·遮歸縣<sup>12)</sup>에 존재하던 성씨였음을 추측하게 된다. 그리고 金·李·朴·林·俞·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 等은 육지부에서 濟州로 부임해오거나 귀양해온 사람들의 정착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家門들이다. 곧 다른 곳에서 이주하여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家門들을 일컬는다. 이들의 성장 및 발전에 의하여 여러 모습으로 투영되어 나타내게 되는데 먼저 清陰 金尙憲의 『南槎錄』에 의하면, 封送馬의 幣이니 三邑 守令은 다 境內의 品官과 백성으로 말(馬)이 있는 자를 기록하고, 혹은 戰馬다 혹은 上의 命에 따라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공공연하게 얹지로 취하고 前例를 삼아서 떠나는 자가 이리하고 들어오는 자가 본받아 그리하기 때문

10) 李樹建, 〈『土姓』研究(其一)〉 pp. 46-47.

고려후기부터 고려왕조의 제주지배가 강화되자 忠烈王 26년에 본 治所외에 東·西道縣을 설치하면서 村이 縣으로 개편되어 17개 縣이 설치되었다. 이 17 縣이 太宗 16년에 濟州牧과 旌義·大靜 三邑으로 개편될 때에 나머지 14縣은 直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제주 본읍의 3姓을 제외하면 다른 縣에는 姓姓이 없으며, 다만 후대에 이주한 來姓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는 『世宗實錄地理志』에서 濟州牧에는 高·梁·夫氏 세 姓姓이 있을 뿐이며, 旌義·大靜兩縣에는 姓姓가 기재되지 않았다.

11) 中宗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姓氏條

鄭金李文安玄咸楊〈竝屬縣〉金李朴林俞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竝來〉

12) 『太宗實錄』太宗 16年 5月 1丁酉條(6日).

願自今 本邑則屬以東道新村縣咸德縣金寧縣 西道貴日縣高內縣涯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 東道縣監 以旌義縣爲本邑 屬以兔山縣狐兒縣洪爐縣等三縣 西道縣監 以大靜縣爲本邑 屬以狼來縣遮歸縣等二縣.

에 사람들의 다 宽을 품었다.<sup>13)</sup> 여기에서도 境內의 品官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옹후의 〈通濟州三家文〉에 의하면, 義兵을 일으키고서 濟州의 高氏 梁氏·文氏 等 세 家門에게 각자의 財力에 따라 혹은 戰馬를 내고 혹은 힘을 모아 서로 扶助하여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성의를 다해주도록 호소하고 있다.<sup>14)</sup> 여기서 壬辰倭亂 당시에 高氏·梁氏·文氏 等을 제주지방의 명문 家門임을 내세워서 義兵운동 하는데 도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실로서는 李元鎮의 『耽羅志』에 보면, 良族을 도모하는 자는 그 賤한 글자를 없이 하고 公賤에 투신하는 자는 그 사사로운 글자를 빼어 버리고 奴婢가 있는 자는 良妻로 바꾸어 만들었다. 심지어는 그 鐵卷을 훔쳐 갔으므로 戸籍에 남아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남아 있는 것도 또한 진실한 기록이라 할 수 없다. 아아 간사한 무리가 제한품의 사육때문에 三邑의 공적을 훔쳐서 諸姓土族으로 하여금 世系의 상고할 바를 모르게 하였으니 통탄한들 어찌하리요.<sup>15)</sup> 여기서 비로소 諸姓土族이라는 用語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留鄉品官·土豪·土族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麗末鮮初의 양반관직의 대기자들인 閑人·閑良을 비롯한 退職者들도 官品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散官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이들을 品官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閑良品官·前衙品官·在京品官·留鄉品官 等으로 상태에 따라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品官은 前職官僚를 포함한 鄉曲에서 品階를 소지하고 있는 자를 일컫는 것이다. 이들 官品類들은 동일

13) 金尚憲, 『南槎錄』 제 4 卷 18 日條

一曰封送馬之弊 三邑守令皆籍其境內品官百姓有馬者 或稱戰馬或稱應求 公然抑取指為前例 往者如是來者效之人皆抱冤。

14) 高從厚, 『正氣錄』 〈通濟州之家文〉

復贊義兵將前臨陂縣令高從厚 泣血稽颡再拜 謹奉于濟州旌義大靜三邑 高姓梁姓 文姓三家文戶諸丈 一中略一 本道公私掃地軍器戰馬指辨無路 私念貴州三邑為力 獨全爰 奉關檄開諭寺奴及大小士民 而重念同姓之親 固有萬世不忘之義 梁姓文姓兩家亦同 豢初不可無一語相及 故敢茲剝肝瀝血冀其門風慕義 伏乞三姓諸丈 慨然磨勦 共垂務怒隨其財力 或人出戰馬 或合力相扶 大以成大 小以成小 上以副神人左右陟降之義 下以慰孤子一家幽明之望 何如情陰辭鑒不知所裁。

15) 李元鎮, 『耽羅志』 《倉庫條》 < 1 籍庫 >

圖良族者 去其賤字 投公賤者 去其私字 有藏獲者 換作良妻甚者 全其鐵卷而盜之所存者無多 而其存者亦非實籍 憨姦細之徒為一己之私欲 盜三邑之公籍 使諸姓土族世系 無所考處 痛歎奈何。

한 身分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이다. 이들 중에는 士族이 있을 수 있고 또 非士族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士族을 文武科出身員子孫과 兩邊四祖俱有顯官者 그리고 자신이 生員進士者로 규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士族의 概念에 관료와 그들의 子孫은 물론 生員・進士들이 士族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었다. 이는 士林勢力의 성장, 性理學 鄉村支配秩序의 定着과 관련하여 이해되는 것이다. 이들이 곧 관료에 비군이라는 점에서 鄉村社會내에서 이들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일반品官類(非士族品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在野士林勢力일 수 있으며 이들 집단이 士林 또는 16世期일 반品官類와는 구별되는 儒者로 인식되는 기본 계층이다. 이렇듯 品官에 대한 인식이 16世期에 접어들면서 변화되고 점차 士族과 品官의 구별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品官과 士族의 分岐현상은 鄉村支配機構에 반영되어 16世期에 새롭게 鄉村社會의 權力 機構로 등장하는 司馬所와 書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sup>16)</sup> 여기에 나타난 土豪는 지방의 유력자로서 곧 豪強品官으로 파악되는데 이도 역시 品官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자료에서 보듯이 留鄉品官・土豪・諸姓士族의 존재하여 제주지방에서도 이들을 在地士族화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18世朝 오면 17世期의 儒鄉分岐와 計將事目的 반포로 인해 많이 변질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17世期의 제주지방의 사회의 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清陰 金尙憲의 『南槎錄』에 의하면, 計軍官의 弊이니, 본주 牧使는 一島를 전제하기 때문에 주인들은 “사또” (타도에서는 觀察使, 節度使의 호칭)라고 칭한다. 軍官은 “營 補將”이라 칭하며 세력이 수령을 누르고, 권력이 別星과 대등하는데, 變亂 후로부터 帶가 늘어 4,50名에 이르렀다. 이 무리들은 무뢰 깡패한 사람이 아니면, 작은 도둑이거나, 간사한 소인의 무리가 많아서 각각 官妓를 끼고, 빈손으로 富를 도모하여 六房을 分掌하여 다 주관하

16) 여기의 品官과 士族의 관한 연구한 論文은 다음의 참조가 된다.

本成茂, 〈朝鮮前期의 身分制度〉《東西文化》13 1976년.

韓永愚, 〈朝鮮初期 兩班研究의 現況과 問題點〉《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1983년.

朴恩卿, 〈高麗後期 地方品官勢力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44 1984년.

는 바가 있다.<sup>17)</sup> 여기서 보듯이 軍官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六房을 分掌하여 하는데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李元鎮의 『耽羅志』에 보면, 대개 三邑의 戶籍은 營中에 합하여 보관하였으나 주민의 이것이 중요함을 몰랐으며 관원이 혹은 명심하여 잘 간수하지 못하고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의 잡배가 별인을 근심하여 奴婢가 反作하고 이미 있으나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지워 버렸으므로 주민들이 잘못 산 자는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그 걸리는 곳을 혹은 짤라버리고 찢어버리고 혹은 도려내고 혹은 발라 개조하였다. 良族을 도모하는 자는 그 천한 글자를 없이하고 公賤에 투신하는 자는 그 사사로운 글자를 빼어버리고 奴婢가 있는 자는 良妻로 바꾸어 만들었다. 심지어는 그 鐵卷을 송두리째 훔쳐갔으므로 戶籍에 남아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남아 있는 자도 또한 진실한 기록이라 할 수 없다.<sup>18)</sup> 戶籍을 갖고서 기록을 바꾸어 버리고 삭제하는 것으로 사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身分制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와해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17世期 이후에 등장하는 鄉族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鄉族들은 그前에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 향촌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됨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留鄉品官·土豪·諸姓士族의 변화과정과 새로운 계층(鄉族)이 등장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다.

## 2. 濟州鄉村 社會의 構造와 實態

제주향촌 사회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면 먼저 제주지방의 존재했던 土官制의 실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 土官制의 실태에 관해서는 李載襲·吉田光男의 연구에 의하여 어느 정도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연구를 바

17) 金尚憲, 『南槎錄』 제 4 卷 18 日.

三曰營軍官之弊 本州牧使 專制一島 故州人稱使道<在他道 稱觀察 節度之號>  
軍官則稱爲營裨將 勢壓守令 權侔別星 自變亂之後增帶 至四五十員 此輩若非  
無賴狂悖之人則 類多穿窬姦細之徒 名挾官妓 空手圖富 分掌六房 皆有所主.

18) 李元鎮, 『耽羅志』 《倉庫條》 〈戶籍庫〉

三邑之籍 合置營中 而州人不知重 此官員或不能謹藏帶 率中雜輩根尋別人 藏獲  
反作己有而 没其所自來 州人之誤買者 恐發違端 其所妨礙處 或剪割之 或裂破  
之或挑削之 或途改之(以下是 주<15>와 같음.)

〈표 1〉 濟 州 軍 丁

科	對象	奉足數	
		太宗 7年	世宗 11年
第1科	左·右都知管	39名	10名
第2科	東·西司守·都鎮撫	30名	8名
第3科	各所都千戶, 東·西上司守	24名	8名
第4科	上鎮撫	21名	6名
第5科	副司守·副鎮撫	18名	6名
第6科	各所 上千戶·鎮撫	15名	6名
第7科	各所 副鎮撫	12名	4名
第8科	各所 千戶	9名	4名
第9科	各所 上·副百戶, 吏兵房吏目	6名	4名
第10科	各所 百戶·六房吏目	3名	2名
合計		177名	58名

탕으로 하여 실태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의 土官은 東·西班牙로 구분되지 않고 守令과 竝立하여 지방행정을 맡고 高位武人으로서 軍戶를 편성하고 있다고<sup>19)</sup> 밝힌 것과 제주도의 土官組織은 舊耽羅國 지배구조를 적접적으로 계승하였으며 土官은 鄉役에 종사하지 않아서 鄉役은 典吏가 담당하여 典吏를 거치면 “鎮撫千戶” 곧 土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제주도의 주민지배는 地方官—土官—典吏—住民의 3종구조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다.<sup>20)</sup> 그렇다면 이 土官制가 운영함에 있어서 軍丁의 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軍丁의 法은 육지와 달라 軍戶편성이 土官제와 직접 연결되고 있다. 이를 도표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의 土官은 東·西班牙로 구분되지도 않으며, 守令의 竝立하여 지방행정을 맡고 高位武人으로서 軍戶를 편성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곧 제주의 土官은 東·西班牙으로 분화되지 않고

19) 李載慶, 〈朝鮮初期의 土官〉《朝鮮初期社會構造研究》pp. 59-61.

20) 吉田光男, 〈朝鮮初의 地方支配—世宗實錄 地理志 姓氏條의 性格檢討〉 pp. 37-39.

吉田光男, 〈15세기 朝鮮의 土官制—李朝初期地方支配體制의 一斷面〉《朝鮮史研究會論文集》18. 1981년.

옛 支配構造를 그대로 계승해오다가 世宗代에 이르러서는 그 구조가 中央의 심한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알 수 있다.<sup>21)</sup> 그리고 앞 장에서 살핀바와 같이 제주의 留鄉品官을 鎮撫一旅帥一書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軍戶의 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李元鎮의 『耽羅志』에 의하면, 제주지방에 존재하는 鄉射堂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嘉樂川 서쪽에서 座首一人 別監三人이 있어 봄과 가을에 一鄉이 齊會하여 鄉射禮를 행한다고<sup>22)</sup> 밝힌 바와 같이 제주지방에서도 在地士族들의 春秋에 모여서 서로의 禮義를 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鄉射禮의 내용을 알고자 하면 먼저 《周禮》의 내용을 파악해야만 한다. 곧 《周禮》의 司徒敎官職條는 지방단위를 鄉·州·黨·族·閭·比로 나누고 그 長을 각각 鄉大夫·州長·黨正·族帥·閭胥·比長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鄉射禮를 州에서, 鄉飲酒禮를 黨에서 각각 행하는 義禮로 되어 있는데, 鄉大夫가 국가의 法을 正月에 司徒로부터 受敎, 그것을 州長에게 전수하면 州長은 正月 중의 吉日을 택해 鄉射禮를 행하며, 黨正도 마찬가지로 하되, 四時 孟月의 吉日을 택해 鄉飲酒禮를 행한다고 하였다. 두 義禮는 모두 邦法을 잘 지키는자를 앞세우는 것으로 鄉射禮의 “射”的 행위를 “正其志”을 뜻하고, 鄉飲酒禮는 鄉酒의 순위를 齒位 德行·道藝의 순으로 정한다고 한다.<sup>23)</sup> 조선조에서는 《世宗實錄》의 國朝五禮儀 중 鄉射儀, 鄉飲酒禮가 들어 있는데, 鄉射儀는 五禮中 軍禮義式으로서 “매년 3월 3일(가을에는 9월 9일)에 開城府 및 諸道 州·府·郡·縣에서 그 禮를 행한다.”고 하였고, 鄉飲酒禮는 嘉禮의 하나로서 “매년 冬孟에 漢城府 및 諸道 州·府·郡·縣에서 吉辰을 택해 그 禮를 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前者は “孝悌忠信好禮不亂者”를 後者は “年高有德及才行者”를 각각 앞세운다고 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世宗實錄》國朝五禮儀에 의해서 濟州牧에도 鄉射禮를 실시하여 春秋에 거행했으며 孝悌忠信好禮不亂者에 대한 의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것이 후대

21) 李載禪, 〈朝鮮初期의 土官〉《朝鮮初期社會構造研究》pp. 59-61.

22) 李元鎮, 『耽羅志』《宮室條》《鄉射堂記》

在嘉樂川西 座首一人 別監三人 春秋一鄉齊會 行鄉射禮.

23) 『周禮』卷12. 司徒敎官職條 周禮程注.

의 기록인 耽羅志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여 제주지방에도 座首와 別監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어찌면 諸性士族 또는 留鄉品官・土豪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座首와 別監은 그 지방을 대표하는 土姓士族으로 地方官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정도 그 지방에서 기반을 다진 사람들의 기능하기 때문이다. 제주지방의 鄉射堂記에 관한 기록은 앞서 李元鎮의 『耽羅志』와 같이 李源祚의 『耽羅誌草本』에 의하면, 鄉射堂은 察眉軒의 西北에 있어 肅宗辛未(1691年)에 判官 金凍(1689年 4月 到任~1691年 8月 遷歸)이 세워 座首一人과 別監三人을 두었다.<sup>24)</sup>는 기록과 東京大所藏本 『耽羅誌』에 보면, 鄉射堂은 옛날에는 嘉樂川 西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察眉軒 西北에 있다. 肃宗辛未年에 節制使 李宇恒과 判官 金凍이 세워 이름을 鄉射堂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英祖丁巳(1737年)에 牧使 柳號模가 鄉社堂으로 改編하였고 憲宗乙未(1835年) 봄에 牧使 朴長復과 判官 金英業이 重建하여 座首一人, 別監三人을 두었다.<sup>25)</sup> 이상에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鄉射堂은 1691년에 判官 金凍이 嘉樂川에 있던 것을 察眉軒 西北으로 옮겨 鄉射堂을 건립했다는 사실과 1737년에 鄉射堂으로 개편되기도 하였으며 1835년에는 鄉射堂이 중전되어 座首一人, 別監三人을 두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鄉射堂은 廟舍이고 留鄉所는 三鄉所란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人的組職을 가르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廟舍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鄉射堂이란 명칭에서는 朱子學의 禮俗의 실지를 통하여 鄉村秩序와 自治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留鄉品官들의 의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鄉射堂은 처음 官衙에서 떨어진 景勝한 곳에 一鄉父老의 힘과 官衙의 후원으로 세워졌는데 대개 20間內外 정도였고 廐房廚舍까지 마련된 곳도 있었다. 따라서 鄉射堂은 三鄉所의 常勤執務處요, 鄉案을 보관하던 곳이요, 鄉會가 열리는 곳이었

24) 李源祚, 『耽羅誌草本』《公解條》〈鄉射堂記〉

在察眉軒西北 肃宗辛未 判官金凍 建 座首一人 別監三人.

25) 日本東京大學所藏本 『耽羅誌』《公解條》〈鄉射堂記〉

在嘉樂川西 今在察眉軒西北 肃宗辛未 節制使李宇恒 判官金凍 建 命之曰 鄉射堂 正廟丁巳 牧使柳號模 改便鄉社堂 憲宗乙未春 牧 朴長復 判官金英業 重建 座首一人 別監三人.

으나 鄉員과 그子弟외에는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初期에는 鄉射堂이 官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 後期에 이르러서 官衙構內에 있으므로 인해 鄉射禮·鄉飲酒禮도 鄉廳에서 열리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初期에는 鄉射堂의 守令을 규제하였지만 後期에 守令아래 그의 보좌역으로 격하된 鄉射堂의 기능과 관련이 깊은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지방에의 경우에도 州城 밖 東南쪽에 큰돌밀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온 곳을 嘉樂川이라 하였듯이 嘉樂川은 州城밖에 있었다. 그런데 察眉軒은 州城내에 있으므로 인해 官衙 中心地와 근접한 곳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방에서도 官衙에서 멀리 있었던 것이 官衙構內로 移建하는 것을 위의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주지방의 鄉射堂은 『南宦博物』에 의하면 12間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인해 보통으로 하는 20間이 아니라 12間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sup>26)</sup> 다만 濟州鄉校의 所藏된 《鄉案》과 《薦記》가 어떠한 연유로 鄉校에 있게 된 지에 관해서는 차후에 밝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鄉射堂의 重修과정에 관해서는 차후에 鄉案에 관한 資料의 性格을 분석할때에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으로 한다. 宣祖 36年(1601年)에 京在所가 革罷<sup>27)</sup>되어 留鄉所의 座首를 守令이 差定하여 임명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留鄉所가 지니는 기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지방의 《鄉案》자체가 1623년(仁祖 即位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京在所의 革罷이후에 생성된 鄉案의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1623年的 《鄉案》자체에 의하면 仙과 手決한 사람을 비교해 보아도 京在所의 革罷前까지 《鄉案》이 존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sup>28)</sup> 그러므로 제주의 《鄉射堂》과 1623年的 《鄉案》의 서로

26) 李衡祥, 『南宦博物』誌略條  
鄉廳 十二間.

27) 京在所의 革罷에 관한 研究 論文은 아래와 같다.

金仁杰, 〈朝鮮後期 鄉廳의 추이와 지배 총동향〉《韓國文》2. 1981.

金龍德, 〈鄉廳沿革考〉《韓國史研究》21. 22合輯, 1978.

金龍德, 〈京在所論〉《朝鮮學報》90. 1979.

28) 여기에 관한 것은 鄉案에 入錄되어 있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1623년의 鄉案에 나타난 梁大成은 宣祖 甲午(1594年)에 梁恵는 明宗 戊午(1558年)에 梁淵은 明宗 戊午(1558年)에 梁忠조는 光海 丁巳(1617年)에 武科及第 한 年度로 밝히고 있다. 吳鍾은 仁祖 癸亥(1623年)에 文科及第한

연관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耽羅志』의 편찬연대가 孝宗 4年(1653年)으로 여기 실려 있는 鄉射堂이 1653年 이전에 전립되어 있었기에 『耽羅志』에 기록이 실려 있게 된 까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는 1623年的 《鄉案》과의 관련성이 있음이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孝宗 5年(1654年)에 試將事目<sup>29)</sup>이 실시되었는데, 鄉廳에 관계되는 것으로 試將은 鎮管設營處를 본거로 하되 所管 각邑을 往來巡歷하면서 操練 軍器를 검열하는데 守令의 不法은 監司·備邊司等에 보고처리하고 특히 軍務에 관해서는 중대한 犯過는 직접 國王에 啓聞하고 가벼운 犯過에 대해서는 座首色吏를 杖 80이 하는 試將權限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각 邑 東伍軍<sup>30)</sup>은 土豪들의 民丁을 많이 隱匿役使하는 까닭에 노약자로 人數만 荷充할 따름인데 이제부터 東伍軍의 差役·補充·軍器整備는 座首와 兵房의 專管事項으로 삼고 해당 座首 兵房의 용도, 연령을 적은 痞記를 兵使·試將에게 보내며 春秋 軍卒習操 有事軍興時에는 座首가 군사를 領率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民丁을 容隱하는 土豪가 많았으므로 軍卒補充에 고심한 정부는 土豪이거나 그들과 밀착된 座首에게 그 閑丁括出

것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鄉案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梁大成(仙)·梁暉(手決)·梁淵(手決)·梁忠조(手決)·吳遷(手決)으로 나타나는데 梁大成은 1623년에 鄉案을 작성할 때에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仙으로 표시되었고 나머지는 生存한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鄉案에 手決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 資料로는 《龍榜錄》·《蓮榜錄》·《武科及第先生案》을 참고로 하였다. 이들 資料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29) 試將事目的 實施에 관한 연구 논문은 다음 것의 참조된다.  
金德龍, 〈鄉廳沿革考〉(韓國史研究) 21·22合輯, 1978.
- 車文燮, 〈朝鮮條 孝宗의 軍備擴充(上·下)〉檀國大學論文集, 1·2, 1967, 1968.
- 30) 제주지방의 東伍軍에 관하여서는 李元鎮의 『耽羅志』(軍兵條)〈東伍〉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여기에 보면 東伍의 時數는 3,056名이다. 옛날에 陳書의 法에 方略을 만들어 事變을 대처하였으나 지금에는 紀效新書의 法에 따라 東伍를 만들어 操練하는데 오로지 兵學指南의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본래 東伍軍은 訓練醫監이 設置된 후 地方의 關方을 담당하기 위하여 柳成龍의 建議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東伍軍은 公私無役의 良民 및 賤民중에서 操練을 감당할 만한 者를 뽑아 編成하였는데 仁祖時에는 그 수효가 11萬名에 달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것이 孝宗時 北伐計劃으로 한때 강화되어 軍士에게 紿復이 폐지되었다. 李元鎮의 『耽羅志』의 내용은 孝宗 때 이루어지는 北伐計劃과 관련되는 제주지방의 東伍軍의 資料인 것이다.

의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軍務도 軍器도 稽軍도 鄉所에게 책임지우며 操鍊에도 鄉所를 수행케 하여 자칫 잘못이 있으면 拿入重棍케 되었으니 品官들은 이 위난에 따르는 座首職을 한사코 기피하니 종전 기준으로는 자격이 부족한자, 곧 鄉外人이라도 취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家門을 자랑하는 品官들은 한 사코 기피하게 되고 逐利의 무리들로 填差되어 크게 鄉任資質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것은 鄉員이 아닌 자들, 곧 疏族·寒門·商民 等의 逐利를 위해 鄉任을 맡게 되는데, 이를 鄉族이라고 하며 土姓土族과 分據되는 新興階層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sup>31)</sup> 이리하여 鄉廳任員들은 鄉吏와 손잡고 온갖 弄奸을 일삼아 腐敗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갔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賣鄉·賣任의 형태로 나타난다. 賣鄉에는 鄉任·軍任·面任을 賂錢을 받고 파는 것과 禮錢을 받고 鄉案·校案에 올리는 것이 있는데 不正한 守令이 있어서 錢穀을 횡령하면 발각되기 쉽고 또 가령 발각 안 되더라도 잃는 것은 錢穀이니 그 弊가 오히려 적은 것이다. 賣鄉을 하면 數十兩에서 일백여 兩이나 받는데 모두 자원한 것이므로 憎謗도 없고 隣邑이나 監營에 알려지지도 않게致富가 되는 것이다. 한번 鄉任·軍任을 겪거나 鄉案·校案에 오르면 軍役·搖役을 免하게 되어 軍額은 더욱 부족하여지고 摘役은 더욱 편중하게 되어 民弊가 날로 더해가므로 그 弊는 큰 것이다. 그리하여 鄉案에 오르면 그 子孫弟姪에 이르기까지 軍役 等을 면하게 되므로 家產이 있는 자는 百計行賂를 도모하게 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행세였다. 그렇다면 제주지방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서 확인해 파악된다. 儒鄉의 案을 기재하는 경우와 吏校의 벼슬아치를 임명하는 동안에는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졌다. 어떤 것은 남겨두고 어떤 것은 빼어버리니 거의 영구히 변하지 않는 바른 법도가 없었다. 비단 홀로 자기를 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아첨하고 총애하는 계산을 행하여 겹쳐서 쌓아지게 되었다. 혹 대궐에 뚫어진 자리를 드러냄으로서 本牧(濟州牧)에 牽將에게 통보케 하여 청탁한 것을 만족

31) 여기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논문은 아래와 같다.

金龍德, 〈鄉約과 鄉規《韓國史論》8. 國史編纂委員會, 1980.

金仁杰, 〈조선후기 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土族〉《金哲培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하게 들어주고 그 뇌물 받은 것을 허락하여 주었다.<sup>32)</sup>에서 儒案·鄉案의 작성과 吏校의 差任할 때에 공공연한 뇌물수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발견되고 있는 《戶籍中草》에 納粟이라는 用語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納粟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富裕한 자가 어느정도의 棉布(무명)을 지불하고 난 후에 벼슬을 얻는 것을 일컫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제주지방의 경우에는 17세기 이후에는 守令權의 實勢가 強하여 地方을 차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在地士族과 鄉吏層은 守令權이支配下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곧 제주지방의 在地士族은 자체적으로 지방행정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守令의 보좌역활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在地士族의 身分制秩序를 具顯하고자 하는 鄉規 자체가 없었던 것이 당연할런지 모르겠다.

32) 《日省錄》純祖 甲戌年(1814年) 3月 15日 丙申條에 濟州察理使 李在秀狀 龍旌義縣監權就一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賣官賣職이 성행하여 濟州社會의 儒任·鄉任·吏任·校任 等은 부패 관료와 밀착하여 任賂額數의 多寡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權仁赫, <19세기초 梁濟海의 謀變 實狀과 그 性格>《耽羅文化》7, 1988년 pp.131-132중에 자료를 再引用한 것임을 밝혀둔다.

“儒鄉錄案之際 吏業差任之間 賄賂公行 存拔陞降殆無常度 非獨爲肥己之資 兼售嫡寵之計 或以見闕之棄 通報於本牧裨將 甘廳所屬 許其受賂。”

33) 守令이 직접 留鄉座首를 差定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濟州牧의 경우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旌義縣의 경우에 守令이 留鄉座首를 差定한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正祖 4(1780年)年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後代의 資料라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다만 차후에 濟州牧의 경우에 관련된 資料와 濟州鄉案과 관련된 資料를 찾아 보강하고자 한다. 이 資料는 金萬錦의 後孫인 前留鄉別監이었던 金鼎台가 留鄉座首로 差定한 任命狀인 것이다. 資料의 原文을 그대로 싣는 것으로 그칠 따름이다.

行縣監爲差定事

留鄉座首差定爲

去乎不輕察任向事

合下抑

照驗施行頂至帖者

右帖下前別監金鼎台准此

乾隆四十五年二月二十九日

差 定

帖

### III. 濟州鄉村 社會의 形態와 性格

#### 1. 濟州鄉案과 薦記의 資料에 대하여

제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鄉案과 薦記가 있는데, 이를 구별하여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濟州鄉案으로는 《鄉案》·《耽羅鄉籍》·《耽羅鄉案》·《濟州鄉案》과 《薦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鄉案》을 보면, 이 《鄉案》은 1623年(仁祖即位年)七月에 鄉案이 처음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座首와 前座首·別監 等을 중심으로 鄉案을 重修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 보면 仙과 手決한 것을 구분하여 이름을 기록하였는데 모두 92名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仙은 돌아가신 분이라는 뜻이며 나머지 手決한 사람은 그 당시에 生存한 인물들을 드러내어 鄉案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하여 仙(돌아가신 분)은 35名이며, 手決(생존한 사람)은 57名으로 나타난다. 重修를 책임한 座首, 前座首로는 高·梁·文·吳씨가 되며, 別監은 趙·高·梁氏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耽羅鄉籍》은 1639年부터 1811年까지의 重修한 鄉案들을 구성하여 나타낸 자료인데, 1639年(仁祖 17年)의 正月 日의 《耽羅鄉籍》에는 단지 姓名만 기록된 자료인데, 이것은 1623年에의 《鄉案》에서 手決(생존한 사람)한 사람들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623年 7月 《鄉案》의 생존한 사람중에서 洪汝翼外 14名이 빠지고 있는데<sup>34)</sup> 이들은 1639年 당시에는 현존하지 않는 인물들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1623年 《鄉案》의 내용을 따라서 기술하는데 있어서 中間에서 이 人物들의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生存한 人物인 42명이 기록되어서 나타난다. 또한, 1811年 閏三月의 《耽羅鄉籍》에는 부록 (1)과 (2)로 구분하여서 그들의 姓名만 기재되어 있는데, 먼저 몇몇 사람이 (75名)이

34) 1623년의 《鄉案》과 1639년의 《耽羅鄉籍》에 의하면 이들은 1623년에 생존한 사람들인데 1639년에 누락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 高昌說 (2) 高得弼 (3) 高允吉 (4) 高荆山 (5) 文經進 (6) 梁渾 (7) 梁淵 (8) 梁湖 (9) 梁亨勗 (10) 梁守誠 (11) 梁忠勗 (12) 趙翊 (13) 趙翰 (14) 洪汝翼 (15) 洪天壽.

姓名을 기재한 후에 重修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 실려 있다. 그렇게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자료이다. 여기에 부록 (1)과 (2)에 대한 설명은 뒷 장에서 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耽羅鄉案》에는 1811年(純祖 11年) 閏三月의 기록으로 몇몇 사람(63名)의 기록과 함께 그 뒤에 重修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된 글이 있다. 그리고 重修한 자들은 幼學 姜·金氏와 別監·座首으로는 姜氏, 鄉長·有司로서는 邊·姜氏等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姜氏가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濟州鄉案》에는 1861年(哲宗 12年) 2月의 鄉案인데 여기도 姓名만 나열하고 뒤에 간단히 鄉案의 重修하게 되는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重修한 자들은 前鄉·幼學·別監·座首·鄉長·有司의 職分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는 거의 姜·金氏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薦記》는 1769年(英祖 45年)에 몇몇 사람(43名)의 명단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重修하게 된 과정에 관한 글이 있은 다음에 姓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자료에서는 먼저 姓名이 기록한 후에 重修과정에 관한 글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을 《鄉案》과 《薦記》를 中心으로 鄉案의 重修한 시기와 鄉案入錄人員을 表로 만들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여 볼때, 앞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鄉案》은 1623年に 기록되었던 것을 1639년에 기록에 의해서 정리된 것을 1811년에 《耽羅鄉籍》에 重修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1623년에 仙(돌아가신 분) 35名을 제외한

〈표 2〉 濟州鄉案, 薦記에 나타난 鄉案入錄 現況

冊　　名	重修時期	入錄人員	作成間隔	比　　較
鄉　　案	1623	92	—	—
耽　羅　鄉　籍	1639	42	16	—
蕩　　記	1769	43	130	—
耽　羅　鄉　籍	1811	31+44	42	—
耽　羅　鄉　案	1811	63	—	—
濟　州　鄉　案	1861	69	50	—

92名에서 35名을 빼면 57名이 되는데 앞서 洪汝翼外 14名(곧 15名)을 같이 제외하면 42名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耽羅鄉籍》, 《耽羅鄉案》에 이르러 鄉案入錄의 人員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곧 《薦記》의 43名에서 《耽羅鄉籍》과 《耽羅鄉案》에서 75名·63名 等으로 入錄人員이 계속 새로 追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11年 《耽羅鄉籍》에는 부록 (1)과 (2)로 구분되는데 부록 (1)은 1696年에 鄉案이 重修된 것을 나타낸 자료로 이는 1691年에 鄉射堂을 중수한 후 懸板을 내걸 때에 참석한 人物들의 구성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통해서 알 수 있다. 곧 부록 (2)가 1769年的 자료이기 때문에 앞선 자료 (부록 (1))가 앞 시대의 자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sup>35)</sup> 부록 (2)는 1769年에 《薦記》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다만 《薦記》의 인물 중에 邊聖彥을 1811年에는 梁昌禹으로 바꾼 사실과 1811年에 金仁慶이라는 인물을 추가한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며 특이한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1769年の 薦記의 내용과 똑같이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서 주의 깊이 파악해야 할 점은 薦記에 수록되어 있던 邊聖彥이 1811年の 《耽羅鄉籍》에 맨 처음에 姓名이 기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811年的 《耽羅鄉籍》은 그 前에 1623年부터 1639年까지의 《鄉案》의 내용과 1696年 鄉案과 1769年 《薦記》의 내용을 총망라한 典籍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자료가 濟州鄉案의 기능을 정확히 밝혀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623年부터 1639年까지의 나타난 重修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글과 1811년에 나타난 鄉案의 重修에 관한 사항을 같이 묶어서 보아야만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1811年的 기록의 1769년의 《薦記》의 重修하는 내용과 1811년의 鄉案 重修내용을 파악해야 만이 정확한 실상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耽羅鄉籍》에

35) 이는 1811년 《耽羅鄉籍》重修過程이 부록(2)에 실려 있는데, 지금의 鄉案을 修錄의 날에 古籍을追考한 즉 1639년 鄉案과 1696년 板刊, 1769년 薦冊이 있었다. 그 뒤에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鄉案 가운데에 기록이 실려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와 같이 앞선 資料는 1639년 鄉案, 1696년 板刊, 1769년 薦記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는 1811년에 重修하면서 1623년의 鄉案과 1639년의 鄉案을 합한 것과 1696년의 鄉案과 1769년의 薦記 자료와 1811년의 鄉案 等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鄉籍이라는 것이다. 또한 1691년의 鄉射堂과 1696년의 鄉案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鄉射堂으로 처음 명명한 것과 鄉射堂에 창건에 참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의 1737년의 鄉射堂과 1769년의 薦記와도 이는 鄉社堂으로 개편될 때에 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1835년의 鄉射堂의 기록과 1869년의 鄉案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것들은 鄉射堂을 창건하는데 기여한 人物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되는 것이 17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賣案·賣任·陞鄉·賣官賣職을 통해서 새로운 계층으로 형성한 사람들의 鄉射堂을 증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의 관련성이다. 따라서 鄉案의 重修내용들의 관한 글은 다음 章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고자 한다. 濟州鄉校의 所藏資料중에는 19세기 後半資料와 20세기의 前半資料도 있으나 이 자료들은 차후에 비교, 검토할 것임을 밝히면서 다만 자료로 소개를 하면 아래와 같다. 곧 《鄉案—1875年 12月 日》, 《鄉案—1892年 5月 日》과 《鄉案—1899年 7月 日》, 《鄉案—1902年 11月 日》 等이 있는데, 여기서 《鄉案—1899年 7月 日》과 《鄉案—1902年 11月 日》에는 鄉案入錄 人員의 姓名을 기록한 후에 그들의 居住地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 2. 濟州鄉案과 薦記에 나타날 形態

대개 留鄉所가 있는 곳에 鄉案이 있었고 鄉案이 있으면 鄉規가 있게 마련이었던 것이 중앙 지방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곧 在地土族은 그들의 支配를 鄉村村社會에 실현하기 위해 각종 立議·約束·節目 等(일반적으로 鄉規)를 갖추고 있었다. 이것들은 鄉案入錄者를 주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당시 지배신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一鄉(한 고을)에 대한 그들의 지배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지방에는 鄉案의 規約이라 할 수 있는 鄉規가 없기 때문에 《鄉案》과 《薦記》의 重修過程, 《鄉案》《薦記》에 나타난 人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앞서 장에

서 살핀 바와 같이 1623年에 鄉案이 처음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仙(돌아가신 분)과 手決한 사람(생존한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重修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다. 그런데 1811年에 重修한 欽羅鄉籍에 의하면 1639年의 鄉案을 1623年의 鄉案에 생존한 사람과 비교, 정리하면서 洪汝翼外 14名이 빠진 사항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鄉案》에 나타난 인물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곧 《鄉案》에 실려있는 인물중에서 《國朝文科榜目》 및 《龍榜錄》·《蓮榜錄》·《武科及第先生安》를 같이 비교하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1623년의 《鄉案》이나 1639년에 鄉案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吳暹을 들 수 있다. 吳暹은 字가 退之로 丁亥(1587년)生이며 父는 夢說인데 祖·曾·外·妻父에 관한 기록은 알 수 없으며 妻으로는 善山府使·長興府使·江原監司와 春秋館修撰兼 尚衣院正을 지냈으며 本貫은 軍威人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吳暹의 父가 吳夢說은 1623年에 《鄉案》중에 仙吳夢說의 기록의 있음으로 인해 一鄉(父子)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1696년의 鄉案을 볼 때에 여기에는 金致鎔과 金繼道·金繼重이 1663年生이며 父는 致鎔인데 祖·曾·外·妻父에 관한 기록은 알 수 없고 다만 七十七歲에 登科하여 典籍으로 命을 받아 歸路에 兵으로서 죽었다는 사실과 本貫은 光山人이라는 것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도 또한 一鄉 관계만 성립되고 있다. 곧 金致鎔과 金繼喆·金繼道·金繼重이 父子관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으로 1769년의 《薦記》와 1811년의 《欽羅鄉籍》부록(2)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1769년의 重修 과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本島는 치우쳐서 海外에 있어 簡樸世族이 비록 드물지만 鄉所(留鄉所)의 임무는 한 고을의 으뜸의 직책인 까닭으로 옛날에는 인재를 소개하여 쓰게 하는 규칙(薦用之規)은 여러 지위와 명망, 재주와 행실이 겸비한 자를 위한 것이었다. 쓰이는 바의 사람(爲用之人)은 먼저 자신의 몸을 닦고 세상 사람의 존경하고 신뢰하는 덕망인 예를 두터이 하여 사양하는 풍속(禮讓之風)과 고을의 기강을 진작(鄉綱之振)하는 것을 대접하는 연유로 달미암아 전통하게 된 까닭이니라.

時代는 멀리 떨어지고 道義는 쇠잔하고 고을에는 좋은 風俗이 없고 사람들이 修養하는 요체를 알지 못하여 다만 벼슬살이하는데 힘쓸 따름이다. 이리하여 요행한 습속이 이미 이루어져 청렴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풍속(廉恥之風)을 점점 더 업신여겨 鄉中에서 염려하는 바가 이에 배양 미쳐서 규모를 논의하여 정합으로서 여러 지위와 명망있는 자로 천거하여 이에 이름을 넣어 채워져 있기를 바라더니 고을에서 명망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요행이 벼슬살이 하는 자로 혼합하여 기록을 하지 말 것이다. 하여금 고을에서 천거하여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따로 가난한 살림으로 인해 비록 옛날의 鄉案과 다를지라도 역시 거의 요행함을 경계하고 책임지게 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sup>36)</sup> 옛날에는 人材를 소개하여 쓰게 하는 규칙(薦用之規)가 여러 지위와 명망, 재주와 행실이 겸비한 자를 위한 것과 쓰이는 바의 사람(爲用之人)이 먼저 자신의 몸을 수양하고 고을의 기강을 진작시키는 데 있었는데 현재(1769년)에는 시대는 멀어지고 도의가 쇠잔하므로 인해 고을에는 좋은 풍속이 없으며 사람들의 수양하는 요체를 모름으로 인해서 요행하게 벼슬살이 하는 길에만 눈이 멀어진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리하여 廉恥의 風俗을 업신여기게 됨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의 그 당시의 모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었다. 바로 규모를 논하여 정합으로 여러 지위와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 천거하여 이름이 채워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오히려 요행함이 벼슬살이하는 자로 혼합하여 기록하게 되어서 천거하며 논의하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사실은 西北지역에서 발견되는 鄉案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곧 平安道의 경우 “關西一路에는 본래 繡縷世族이 없기 때문에 鄉里에서 중히 여기는 바는 儒鄉任에 불과하다. 이것으로써 門戶를 유지하고 이것으로써

36) 『薦記』重修案

本島僻在海外 繡縷世族雖罕 而鄉所之任爲一邑之首任 故昔薦用之規選諸地望才行 兼備者爲之 而爲用之人亦先修其身 以待人望禮義之風鄉綱之振 由此而作矣  
嗚呼世遠道微 鄕無善俗 人不知修己之要 徒務于進徵倅之態習俗已成 漸蔑廉恥之風鄉中之廉每及於此 論定規模以地望者 薦望填名于此非鄉望而倅進者勿爲混錄 使不得參 論於鄉薦 以別糟糠 雖異於古之鄉案 亦庶乎憲責徵倅之一助也。

乾隆己丑 秋八月 庚申序

婚嫁를 치르니 備死圖占하려는 바가 名官보다 심하다”<sup>37)</sup> 이는 앞서 1769년의 《薦記》의 重修過程에 나타난 내용의 것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곧 濟州에는 簡樸世族이 없어 鄉所를 고을의 으뜸인 직책으로 삼아서 門戶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西北에서의 鄉案은 地方財政策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써 守令에 의해 상당부분 조정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이 점은 18世期末 19世期初 추정되는 시기에 해서 穗山의 鄉案入錄에 대한 元鄉의 반발이 守令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데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sup>38)</sup> 그러므로 西北의 鄉案은 三南의 기존 鄉案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濟州의 鄉案 자체도 財政策의 일환으로 鄉案이 운용되게 되면서 자연 그 숫자는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다. 이는 앞서 자료를 설명하면서 鄉案入錄人員이 급증한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濟州의 鄉案은 西北地方처럼 그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여 19世期까지 계속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8세기 중반 제주사회 실상을 《薦記》의 重修過程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여기서 그전의 在地士族들은 禮讓之風과 鄉綱之振 하는데 힘쓰는데 반하여 현재에는 요행함으로 벼슬살이하는 데에만 힘써서 고을의 풍속과 기강이 해이하게 된 것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811年的 汎羅鄉籍에 重修過程을 보면, 지금의 鄉案을 수록하는 날에 옛 鄉案을 열어 봤더니 옛 鄉案은 1639年の 鄉案이며 懸板은 1696年に 것이다. 그 사이에 年間이 거의 六十年이 있었는데 鄉案의 계속하여 기록한 것이 없고 이때에 앞선 사람들의 刊板 중에 前後의 鄉案을 수록하는 가운데에 어찌 가히 낮추리요.<sup>39)</sup> 여기서 알 수 있듯이 鄉案에 관한 資料는 1696年の 것이 있으며, 懸板은 1623年に 관한 것인데 다만 六十年동안 계속하여 鄉案의 重修過程의 없음을 알 수 있

37) 《英祖實錄》英祖 48年 7月 庚子條.

38) 金仁傑, 〈朝鮮後期 鄉案의 性格變化와 在地士族〉 pp. 555-556.

39) 『汎羅鄉籍』 鄉案 重修

今此鄉案修錄之日 開誠舊鄉案則崇德己卯 懸板則康熙丙子也 其間年數幾乎六十載矣 乃無鄉案之繼錄 而伊時先進只刊板中則 前後鄉案修錄之中豈可泛然首過哉 今以傳騰名字移錄 舊案之左以備後觀云。

嘉慶十六年 辛未 閏三月日 附錄

〈표 3〉 濟州鄉案과 薦記에 나타난 姓氏比較

1623年	生								仙								
	高	梁	文	金	洪	夫	吳	其他	合計	高	梁	文	金	洪	夫	吳	其他
	17	20	5	6	2	1	2	4	57	10	9	4	6	3	1	1	35
1639年	高	金	文	梁	洪	夫	吳	趙	許	姜	邊						42명
	13	6	4	13	2	1	1	1	1								42명
1696年	5	8	2	7	1			4	1			3					31명
1769年	5	14		11		1	1			8	2						42명

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향안의 1639年에 重修한 후에 1696年에 이르러 鄉案이 거의 다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691年的 懸板은 앞서 金凍 判官의 鄉射堂을 건립한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곧 判官 金凍이 嘉樂川 서쪽에 있었던 鄉射堂을 察眉軌 西北쪽으로 옮겨 건립하여 重修한 것이다. 바로 이는 1691年에 鄉射堂을 건립하여 重建한 五年後에 懸板을 달았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1769年の 《薦記》에 관한 資料로 앞서 1737年(英祖 2년)에 鄉射堂으로 改編할 때에 重建하는데 참여한 인물 중심으로 1769年の 《薦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623年부터 1769年까지의 《鄉案》과 《薦記》를 중심으로 入錄人員들의 姓氏를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앞서 資料를 설명하면서 지적하듯이 제주지방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高·梁·夫·文氏가 중심을 이루다가 차후에 姜·金氏와 高·梁氏가 주축으로 在地士族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623年の 《鄉案》에는 생존한 분과 돌아가신 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별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나머지 1639年부터 1769年까지는 생존한 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음을 밝혀둔다. 곧 1623年에는 高·梁·文氏가 주축을 형성하여 지배하다가 1639年에 이르러 高·梁·金·文氏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金氏가 재지세력으로 등장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696年 金·梁·高·吳氏가 중심으로 형성되

## 〈표 4〉 濟州 姓氏의 比較

資 料	土 姓	屬 縣 姓	來 姓
實地	高·梁·夫		
輿地勝覽	高·梁·夫·文	鄭·金·李·文·安·玄·咸·楊	金·李·朴·林·俞·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
耽羅志	高·梁·夫·文	鄭·金·李·文·安·玄·咸·楊	金·李·朴·林·俞·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黃·白·南·牟·許·張·任·邊
南宮博物	高·梁·夫·文	鄭·金·李·文·安·玄·咸·楊	金·李·朴·林·俞·周·趙·宋·鄭·洪·徐·崔·吳·車·池·韓·馬

고 있는데 이는 性理學의인 이데올로기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발생하여 생긴 三姓祠의 태동과 橋林書院의 創建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高·梁·夫氏가 三姓祠와 橋林書院의 有司와 院長, 三姓祠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在地土族의 명단인 鄉案에서 거의 많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40)</sup> 마지막으로 1769年에 金·梁·姜·高氏가 주축으로 在地土族의 질서가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姜氏가 대표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곧 17世期의 초반에는 高·梁·文氏가 중심으로 이루고, 17世期 후반에 이르러서는 金·吳氏의 중심으로 구축되었다가 18世期 후반에는 金·姜씨가 支配土族으로 형성된 것이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다만 이는 《鄉案》과 《薦記》의 資料를 통해서 살펴본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들의 구체적인 실상은 차후에 《戶籍中草》와 《土地賣買記》·《財產分財記》등의 典籍을 통해서 정확한 실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40) 이는 全國的인 현상으로 그前에 在地土族들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새로 운 隊層인 鄉族의 鄉案에 入錄하므로 인해 書院이나 鄉校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在地土族들의 鄉族과 분명히 세력을 구분하는데 있었다.

나타난 특성들은 姓氏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世宗實錄地理志》와 《新增東國輿地勝覽》 및 《耽羅志》, 《南宦博物》에 나타난 姓氏를 도표 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世宗實錄地理志》에는 제주의 土姓으로 三姓의 姓氏(高·梁·夫)가 등장하고 있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三姓에다가 文氏가 새로이 첨가되어 문씨가 土姓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屬縣姓은 앞서 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7개 縣에 있던 姓氏였다. 그리고 여기 〈표 4〉에서는 來姓중에서는 본토에서 온 姓氏만을 정리하였으며, 다른 여타 姓氏는 中國과 雲南에서 온 姓氏임을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밝히고 있다. 곧 元에서 온 姓氏로서는 趙·李·石·肖·鄭·姜·張·宋·周·秦이며, 雲南에서 온 姓氏로서는 梁·安·姜·對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다만 明나라 초년에 雲南을 평정하고 梁王의 家屬을 옮기어 제주에安置한 사실을 간단한 注釋으로 설명하고 있다. 來姓의 관한 것을 여기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李元鎮의 《耽羅志》에 이르러 본토에서 온 姓氏중 黃·白·南·牟·許·張·任·邊氏 等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다 추가되고 있다. 이는 李元鎮의 《耽羅志》를 작성할 때에 제주출신 典籍 高弘進과 아울러 작성한 것으로 그 당시의 실상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본다.<sup>41)</sup> 그러므로 하여 이들의 17世期 후반에 제주에 移去하여 정착한 姓氏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의 土姓·屬縣姓·來姓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들의 변화도 시대에 알맞게 형성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 3. 鄉案과 薦記의 性格分析

앞 장에서 鄉案과 薦記에 나타난 形態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鄉案과 薦記에 드러난 性格 等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鄉案은 在地土族의 名單으로서 다른 지방과 같이 名單은 존속하지만 거기에 規約인 鄉規는 제주지방에는 특이하게도 없는데 이는 변방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土姓土族들의 在地土族

41) 이는 李元鎮의 『耽羅志』의 跋文에 의하면 耽羅志를 작성할 때에 東國輿地勝覽과 金淨의 風土錄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化하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더디어져서 이렇게 늦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한다. 앞서 1623年的 鄉案과 1639年的 鄉案을 비교해 볼 때에 부자(父子)의 관계가 성립되는 까닭에 一鄉의 모습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祖·曾·外·妻父으로 이루어지는 四鄉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볼 수 없었다. 이는 다른 지방의 鄉案에 등장하는 鄉規가 없는 이유도 이런 연유로 해서 제주지방에는 鄉規가 없는 까닭일 수도 있다. 이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인물을 중심으로 《國朝文科榜目》·《龍榜錄》·《蓮榜錄》·《武科及第安》等과 《戶籍中草》를 참조하여 밝혀져야 만이 제주鄉案의 구체적인 성격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제주지방에 나타난 鄉射堂은 1603년에 이루어진 京在所의 革罷로 인해 座首 지위가 격하되는 시기에 重修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주지방에는 壬辰倭亂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다만 1601년에 吉運節·蘇德裕의 亂으로 말미암아 제주지방의 여러 土族들의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sup>42)</sup> 앞서의 일로 인해 제주지방의 在地土族 劑力化가 그만큼 약화된 것으로 또한 在京所의 革罷의 영향으로 더욱더 세력이 미미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제주지방의 鄉射堂의 기능의 어떠한 모습을 지녔는지에 대한 자료가 단편적인 까닭에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길 따름이다. 그러나 여타의 《邑志》에 나타난 〈鄉射堂記〉를 통해서 볼 때에 제주지방에도 射鄉堂이 존속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1603년의 京在所의 革罷가 이루어진 후에 형성되었던 까닭으로 儒鄉分岐로 이후에 전립된 된 것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제주鄉案 자체도 京在所의 革罷이전에 형성되었던 鄉案처럼 의미와 기능,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3)</sup> 그렇지

42) 金尚憲, 『南槎錄』과 『宣祖實錄』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곧 金尚憲의 『南槎錄』에 의해 볼 때에, 善山人 吉運節과 益山人 蘇德裕, 海南僧 惠修等과 같이 제주에 와서 本土人 文忠基·洪敬源 등 十餘人을 끌어 牧使以下 三邑 守令을 죽이고 제주전체에 걸쳐 叛亂을 일으키려다가 舉事 前에 일이 누설되어 吉運節이 自首하였던 고로 蘇德裕·文忠基 등 20人을 잡아 서울로 압송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本土인의 이 사건과 연루되어 劑力이 弱化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43) 대표적인 鄉案으로는 壬辰倭亂 이후에 형성된 鄉案중에서도 京在所의 革罷이 전의 鄉案의 기능은 대체로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이다. 壬辰倭亂以後

만 제주지방에도 이들의 향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在地士族들이 결속하여 차후에 守令權의 强化하는 데 하나의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그러므로 하여 제주지방의 경우에는 守令權이 强化되어 在地士族과 鄉吏層의 守令을 보좌할 뿐 구체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守令과 대등한 입장에는 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濟州鄉案에 鄉案入錄이 급증하는 것은 良役變通과 일정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은 均役法의 실시논의 과정에서 확인된다.<sup>45)</sup> 그러므로 鄉案에 집결한 鄉品의 稀孽은 물론 鄉品까지도 別軍官(選武軍官)에 差定할 것인지의 여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良役變通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이다. 확실한 所據處가 없는 士族의 경우 鄉案을 그들의 한 근거처로 삼게 되면서부터 鄉案의 入錄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鄉案》과 《薦記》에 나타난 姓氏를 중심으로 분석해 볼 때에 17世期 초반에는 高·梁·夫·文氏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邑志에 姓氏條에 나타난 土姓의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17世期 후반에는 金·吳氏 等이 중심으로 이는 본토에서 온 곧 來姓을 드러냈던 것이며, 18世期 후반에는 金·姜氏가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온 來姓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차후에 武科及第者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도 더욱 더 확연히 볼 수 있는 것이다.<sup>46)</sup> 또한, 濟州鄉案도

의 鄉案은 嶺南의 安東·尙州·湖南의 光州 등에 나타난 것으로 一鄉의 士族·世族들의 王亂後 留鄉所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여기서의 鄉案은 그들의 身分의 具顯體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鄉案은 一鄉의 士族案으로서 鄉任의 선출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鄉案의 그 身分의 閉鎖性을 지녔다는 점이다.

44) 李衡祥, 『耽羅錄』에 의하면 제주지방의 巫俗(심방)의 무리가 사회의 폐단과 실정의 드러남에 제주지방의 有識者들 곧 在地士族들의 瓶窓 李衡祥에게 여러 弊端을 是正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守令權을 强化하는데 기여하는 하나의 예증이 된다.

45) 均役法의 實施論議 관한 論文은 아래와 같다.

車文燮, 〈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史學研究》10·11, 1961.

朴廣成, 〈均役法施行以後의 良役에 대하여〉《省谷論叢》3, 1972.

鄭萬祚, 〈朝鮮後期의 良役變通 論議에 대한 檢討—均役法 成立의 背景〉《同德女大論文集》7, 1977.

鄭萬祚, 〈均役法의 選武軍官一閑遊者 問題와 관련하여〉《韓國史研究》18, 1977.

46) 여기에 관한 것으로는 《武科及第先生案》에 나타난 통계 중심으로 파악하여 계산해 본 것이다. 곧 통계에 의하면 武科及第者 중 가장 많은 姓氏로는 高氏

西北地方과 같이 鄉案은 地方財政策과 일정한 관련을 맺어 守令에 의해 상당히 조정되고 있었으며, 鄉案入錄 人員이 급증하여 19世期까지 기능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sup>47)</sup> 그러므로 하여 17世期 중반, 17世期 후반, 18世期 후반에 나타나는 여러 姓氏등을 중심으로 제주지방의 在地士族化하여 가는 과정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앞서의 在地士族들은 鄉族으로 성장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여러 그들의 納粟이라는 형태 또는 賣官賣職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와 벼슬이 향상되고 세력화함으로써 그들의 在地士族化하는 결속을 형성케 된 것이다. 鄉廳의 부폐·작폐도 다른 모든 부문과 마찬가지로 국에 이르렀다. 賣官賣職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자 賂物로 산 벼슬이요 任債로 얻은 것이 鄉任들이었다. 그것은 京在所 革罷 이후 座首는 守令에 의하여 進退가 좌우되었고 營將事目 頒布 이후로는 座首를 營將任意로 처벌할 수 있게 되자 座首 자리는 家門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忌避하는 바가 되어 士族들은 鄉中事에 대하여 是非를 말하지 않고 鄉廳에 출입 안하는 것으로 遠辱의 상계를 삼았으니 이 틈을 이용하여 鄉任을 차지한 것은 鄉族들이었다. 이들은 鄉廳의 부폐를 기반으로 하여 점차 饒實해졌고 一部士族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한편 여기서 간단하게 座首·別監의 직무와 기능, 역할 등을 정리해본다. 座首·別監 및 都監·監官의 직무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座首는 田稅·軍役·搖役의 賦課差定이며 還粟·烽臺·大同·刑獄 等의 일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權限은 風憲·倉監을 임명하는 人事權이었다. 사실상의 風憲은 鄉品중에서 擇任되어 面內의 文報·收稅·差役·禁令·權農·教化 等 모든 一線 對民 行政實務를 주관하였고 副憲一人은 風憲有故時 代理를 보는 面內 第二人者이고 檢督一人은 中庶 將校중에서 차임되어 上納錢數의 檢收를 맡았으며 都長一人은 경찰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광범한 권능을 가진 風憲의 選定을 座首가 맡았

47) 47名이며 金氏가 105名, 姜氏가 30名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姓氏가 제주지방에서 武科及第者 중 특출하게 많은 姓氏들이다.

47) 이에 관한 資料는 《鄉案—1875年 12月 日》에는 48名이 入錄되었으며 《鄉案—1892年 5月 日》에는 193名, 《鄉案—1899年 7月 日》에는 136名이 入錄되어 있다. 이는 앞선 시기의 鄉案보다 두배나 增加하여 기록되는 것이다.

던 만큼 그公正여부는 民政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鄉會 또는 鄉執綱, 鄉先生이 薦望하던 鄉廳任員의 人事도 賣鄉·陞鄉·鄉戰 等으로 鄉規自體가 空洞化하여 점차 守令이 실질적으로 擇定됨에 따라 鄉廳人事에 대한 吏房이 권한이 커갔거니와 鄉規·鄉綱이 亂脈相을 이루기 전에는 지방실정이 생소한 守令은 土着大姓들인 座首의 의향대로 風憲·倉監들의 人事들로 정했으나 鄉任擇定은 一付於鄉廳이 관례였다. 그리고 守令이 교체되면 印信을 전수하는 것도 鄉所의 임무였다. 座首는 印信을 갖고 상경하는데 長途의 여비로 邸責을 져서 결국 邸還穀을 축내는 폐단이 있으므로 新舊官이 모두 京中에 있는 경우 鄉所가 遠來할 필요는 없어서 邸吏가 전하고 新舊官이 遠地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舊例에 의하여 座首나 別監이 印信을 전하고 在官鄉所는 五里밖까지 나가서 新官을 영접하는 관례였다. 守令이 到任하면 각 官庫의 현황확인을 하는데 이때에도 三鄉所가 각 倉色吏·戶長·吏房 等과 함께 입회하여 石數 등을 점검하고 署名하였다. 또 公庫錢穀을 출납할 때에도 三鄉所 三公兄이 그 업무와 거기 관한 文書作成을 감독하였고 사고가 있으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다. 곧 大同米·還上米·軍布錢等에 관한 文書作所을 倉吏·鄉所·三公兄 等이 공동으로 하고 이들의 모두 署名하여야 公文書로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每月 每朔마다 官衙의 用度支出은 회계처부하는데 이 일도 座首·吏房이 주관하였다. 官衙의 용도회계란 官衙의 세입중에서 지출된 모든 항목과 액수를 회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官衙의 用度는 守令에 機密에 속하는 사항도 포함되는데 그 經費支出簿의 작성을 관리하는 일을 座首가 맡고 있었던 것은 座首는 곧 守令의 心腹의 존재였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大小差役의 일도 座首의 책임이고 邸還穀도 중요한 소임이었으며 賑政에 있어서 救恤이 시급한 자를公正하게 초출하는 抄飢監官의 일도 前任 鄉所중에서 임명되고 時任鄉所는 監賑監官을 맡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鄉所는 守令의 諮問에 응할 뿐만 아니라 鄉吏의 감독 및 각종 實務의 담당자로서 亞官 곧 守令의 首席補佐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座首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대부분의 守令들의 大小訟事 특히 軍役과 差役에 관한 訟事를 鄉廳에서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 IV. 結 語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要約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주지방에는 高麗 시대부터 元의 지배하에 토착민의 회유책의 일환인 土官制가 존재하여 朝鮮 朝 文宗, 韶宗까지 존속하여 조선초기의 제주지방을 지배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이는 王爵을 경시하고 土官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16世期 이후에 나타난 제주지방의 在地士族으로는 留鄉品官·土豪·諸姓士族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는데, 특히 留鄉品官은 鎮撫一旋帥一書員으로 구성되어져서 軍戶의 法과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제주지방의 土姓士族으로는 高·梁·夫·文氏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가 17世期 이후에는 다른 姓氏가 성장 및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7世期 이후에 발생하는 《戶籍》에서 발생한 곧 身分制의 弊端이 기인하여 신분제적인 질서가 와해되면서 새로운 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주 향촌사회의 구조는 朝鮮前期의 土官制의 전통을 이어 받아 옛 지배구조를 그대로 계승하여 이루어져 지다가 16世期后반·17世期 이르러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제주지방에도 鄉射堂記가 있어서 鄉射禮가 실시되었으며 제주지방(濟州牧)을 지배하는 기구로 존재하였다. 제주지방의 鄉射堂의 위치는 전기에는 官衙에서 떨어진 곳이 후기에 이르면 官衙 중심지 근접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鄉射堂의 면적은 12間이며 1623년의 鄉案과 懈羅志에 실려있는 鄉射堂과는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곧 이는 京在所 革罷(1603年) 이후에 작성된 濟州鄉案으로 파악하였으며 이와 관련되어 鄉射堂이 건립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제주지방에도 새로운 계층이 발생하는데 이는 제주지방에 드러나고 있는 儒任·鄉任·吏任·校任 等이 實官實職하는 것과 《戶籍中草》에 드러난 納東이라는 형태로 實鄉·陞鄉하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관련된 것으로 鄉射堂의 重修 및 改編에 새로운 계층이 참여하여 鄉案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在地士族의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 여겼다. 제주지방의 鄉案과 薦記로 크게 구분하여 鄉案과 薦記의 자료를 설명하고 거기에 드러난 성격을 보았는데 특히 제주지방에는 一鄉(父子)의 관계만 성립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鄉案과 薦記의 重修過程에 드러난 바는 簡樸世族이 없었으며 다만 鄉所의 직임을 중히 여기는 것을 파악하여 이는 西北지방처럼 鄉案의 지방財政策의 일환으로 守令에 의해 조정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鄉案入錄者가 시대가 내려오면 올수록 급증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姓氏條를 중심과 鄉案과 薦記에 드러난 姓氏에서 조선전기에는 高·梁·夫·文氏가 중심되었다가 17世期 후반에는 金·吳氏가 18세기 金·姜氏가 支配士族으로 형성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이런 것이 鄉案에 올라있는 在地土族들의 결속하여 守令과 대등한 위치에 서로 抗拒관계가 아니라 守令權을 강화하는데 하나의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드러낸 것은 제주지방의 鄉案과 薦記를 중심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는 차후에 제주지방의 身分制를 규명해주는 《戶籍中草》의 분석이 행해지면 더욱더 확연하게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주지방에서 文科와 武科·門蔭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한 家門을 파악해야 하며 제주지방에서 座首·別監에 관한 地位의 변화과정도 어느 정도 해명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제주의 鄉射堂과 鄉校, 또는 橫林書院과 祠宇와 관계를 중심으로 守令과의 관계 및 鄉吏와의 관계가 밝혀져야 만이 제주지방의 구체적인 실상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길 따름이다.